

「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7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3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시, 결원보충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 구체화(안 제2조의2)
- 임용권자의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 명시(안 제3조)
「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제2항 : 6급의 휴직, 복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, 전보, 휴직, 복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 권한위임
-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법 제25조의2의 개정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됨
- 일부 문구 수정
 1.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문구 수정(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14조)
 2. 직권면직 관련 근거 규정 및 문구 수정(안 제10조)
-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
 1.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 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 2.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 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음

○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생략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09. 6. 30. ~ 7. 20.(21일간)

안산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(결과) : 원안가결(2009. 8. 25.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○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개정(안)

: 경기도 인사행정과-5750(2009.05.07.)

「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 “임용조건”을 “임용자격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별정직 공무원)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, 제7조, 제8조 및 제14조 중 “일반직 공무원”을 각각 “일반직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 중 “과원” 및 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감원” 및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연가, 공가, 병가 및 특별휴가기간 이상으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

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3제2항 중 “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1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” 을 “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” 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김 상 일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사담당 정 상 래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유 성 (행정 3107)

[별표]

지방별정직 지정 가능 공무원(제2조의2 관련)

1. 전산요원
2. 부녀상담원 및 부녀행정요원
3. 아동복지지도원
4. 문화재연구원
5. 향토자료실 운영요원
6. 홍보요원
7. V.T.R요원
8. 조경전문요원
9. 영선관리요원
10. 의료보험 전담요원
11. 항측관리요원
12. 화생방 전담요원
13. 근로청소년 상담요원
14. 교양교육관요원 및 취미교육관요원
15. 조리사요원
16. 문서관리 필름화요원
17. 사회복지전문요원
18. 기록요원
19. 그밖의 특수분야 공무원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----- -----임용자격----- -----
제2조 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별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(이하 “별정직 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② (생략)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	제2조 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(삭제)
< 신 설 >	제2조의2 (별정직 공무원)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무원은 “별표”와 같다.
제3조 (임용권자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	제3조 (임용권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< 신 설 >	제4조의2 (외국인의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제5조 (임용절차 등)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	제5조 (임용절차 등)----- -----일반직 지방공무원----- -----
제7조 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	제7조 (전보)----- ----- -----일반직 지방공무원----- -----
제8조 (근무상한연령)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8조 (근무상한연령) ①----- -----일반직 지방공무원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<u>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</u>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. 직제·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<u>과원이 될 때</u> 3. (생략) 4.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	<p>제10조 (직권면직)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「<u>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u>」 제13조에 따른 연가, 공가, 병가 및 특별휴가기간----- 2. -----<u>감원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-----
<p>제11조 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 	<p>제11조 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<u>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 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의2 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1조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</p> <p>① <u>별정직 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제12조 (근무성적의 평정)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<u>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 (징계)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<u>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13조 (징계) -----「<u>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</u>」-----</p>
<p>제14조 (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) <u>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4조 (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)-----<u>일반직 지방공무원</u>-----</p>